



자살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 재해

서울행법 2000구11856

[인정사실]

망인은 1983년경 황동을 원료로 수도꼭지 등을 제조하는 업체인 소외회사에 입사한 이래 약 15년간 생산부 연마과에 소속되어 수도꼭지 금속표면처리 연마작업을 하여왔는데, 그 작업은 벨트연마가 끝난 제품을 종이버프에 광약을 칠하면서 마찰력으로 표면에 광택을 내는 것으로 작업자는 지정된 좌석에 앉아 손으로 제품을 잡은 상태에서 회전하는 버프에 피연삭체를 마찰시키는 작업이다.

그런데, 소외회사는 1998.3.23경 일방적으로 사형주조과로 전보시켜 종전 작업과 전혀 다른 용해주물주입작업을 하도록 하고, 작업후에는 주입작업의 뒷처리를 하거나 프레스 절단작업, 연삭작업, 트리밍작업 등 하루평균 약 10시간 정도 근무하게 되었다. 또한 용해주물주입작업장에 설치된 전기로의 온도는 약 섭씨 1300도에서 2300도 정도여서 평소에도 작업 중 땀을 흘리고,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했다.

망인은 표면처리연마작업을 할 때까지만 하여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에 이상이 없었는데 위 용해주물주입작업을 담당하고 나서부터 수면을 제대로 취할 수가 없었고,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심한 피로감과 스트레스로 인해 1998.12.2경부터 안용진 내과의원에서 우울증, 무기력증, 신경쇠약의 진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담당 작업부서 등을 조정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생산부 주조과장도 이를 인정하였으나, 정작 회사로부터는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하였다.

이에 망인은 1998.12.31 오후 작업 중 상당히 무거운 수도꼭지 제품이 담긴 인고트 박스를 들다가 허리를 다쳤고, 1999.1.5 11:00경 주물바가지를 들다가 다시 허리를 다쳤으며, 같은 달 18일 13:40경 작업 중 정신을 잃고 쓰러지기까지 했다.

그러자, 회사에서도 1999.1.25 비로소 망인을 연마과 바렐장으로 이전 배치함으로써 연마기계를 이용하여 수도꼭지 부품 연마작업을 담당하게 하였지만, 그 작업도 소음이 아주 심하고 약 40kg 정도 되는 제품박스를 들어야 하는 등 이미 신체적으로 상당히 쇠약해진 망인에게는 매우 힘든 작업으로, 이후에도 우울증 등의 증상을 보였다.

따라서, 1999.1.27부터 신경정신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불안, 초조, 우울함, 의욕 저하, 수면장애, 회사일에 대한 스트레스 및 적응력 저하 등의 증상으로 병명은 “범불안장애”로 최소 2개월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그러던 중 망인은 1999.3.11 11:00경 작업장에서 11.6kg의 제품박스를 들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이때 병원에서는 망인의 질환을 “만성피로증후군”으로 보았고 위 질환의 발생원인은 주로 만성적인 심리적 스트레스, 감정적 갈등이나 긴장감, 좌절감 등에 기

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향후 2주간의 안정치료와 정신과적 치료를 요한다고 진단하였다.

이에 망인은 3월 16일 소외회사에 병가를 신청하려 했는데, 회사의 노무담당자로부터 자진퇴사할 것을 종용받은 한편 앞으로 복직할 생각은 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귀가하여 화를 낸 후 거의 말없이 있다가, 같은 달 18일 고향집에서 전기줄로 목을 매어 자살한 시체로 발견되었다.

[판 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12.31 법률 제6100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264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근로자가 업무상의 질병으로 자살한 경우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도 자살자의 질병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12.14 선고 93누939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망인은 입사 이후

15년 동안 일해 왔던 부서에서 아무런 통보없이 구조용해부서로 전보된 이후 작업환경이 좋지 않고 무겁고 뜨거운 쇳물을 다루어야 하며 시간에 쫓겨가면서 반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됨으로써 항상 긴장을 하여야 하는 등 업무에 부담감을 느끼고 이를 피동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집중력도 떨어져 잦은 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무기력감에 빠지는 등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에 따라 전반적인 불안정감, 식욕저하, 불쾌한 느낌, 불면증, 일에 대한 의욕상실 및 자신감 결여 등으로 인하여 범불안장애, 우울증 및 만성피로증후군의 증상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위와 같은 범불안장애, 우울증 및 만성피로증후군이 발생한 이후 스스로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아왔으나 내성적인 성격이 이러한 증상을 심화시킴에 따라 정신병적 증상으로 발전하여 끝내 이를 극복하지 못한 채 자살을 감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업무 이외의 다른 요인으로 인해 위와 같은 증상 등이 발생하였다거나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과 그 밖에 망인이 자살에 이르기 전에 보인 증세나 언행, 발병으로부터 자살에 이르는 기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와 범불안장애, 우울증 및 만성피로증후군 등의 정신적 이상 상태 및 그에 이은 자살에는 일련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 론]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피고가 원고에게 한 업무외 재해결정처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